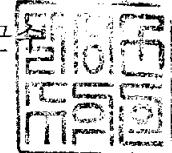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727
------------	-----

제출일자 : 2011. 7.

제출자 :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 가. 민선5기 군정비전의 내실있는 실현을 위하여 정책사업추진, 감사·지도 기능 강화와 저소득층 자녀 지원등을 위한 조직 신설과 농업 정책의 생산적 추진을 위한 기구 조정 등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군민을 위한 참봉사 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 나. 유사·중복 기능을 정비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조직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국 및 실·과·소의 명칭변경 및 신설, 이관 (안 제2조~제7조, 제12조)

- 가. 부군수 산하 ⇨ 정책사업단
- 나. 경제정책실 ⇨ 주민지원국 경제지원과
- 다. 주민지원국 교통과 ⇨ 건설도시국 교통과
- 라. 농업기술센터 : 농축산과 ⇨ 농업정책과,
기술지원과 ⇨ 농촌지도과

4. 조례안 : 불임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2조~제115조, 제117조~제120조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합의 : 행정지원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11. 6. 30. ~ 7. 4. - 의견없음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2조,113조,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이하 “군”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 본청”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으로 한다.

제4조 중 “기획감사실 · 경제정책실”을 “기획감사실 · 정책사업단”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비상대비”를 “비상대비와 민방위 전반”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주민지원국에 주민지원과 · 사회복지과 · 경제지원과 · 문화체육과 · 환경과 및 청소위생과를 둔다.

제6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

제6조 제2항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1. 경제·물가·노동정책에 관한 사항
12. 전통시장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
1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주민지원·사회복지·경제지원·문화체육·환경·청소
위생에 관한 사항

제7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시설과·치수방재과·건축과·교통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

제7조 제2항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7호부터 제22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
17.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
18. 불법 주·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
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2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
21. 차량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건설·도시시설·치수방재·건축·교통·공원녹지에 관한
사항

제8조 제1항 중 “법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를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4항 별표1의 다사읍 보건지소의 소재지란 중 “매곡리 494”를
“매곡리 885-1”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농축산과·기술지원과”를 “농업정책과·농촌지도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유가면 용리 산 10번지”를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26”로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별표의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담당”을 “기획담당”으로, “실·과·소장”을 “실·단·과·소장”으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담당관”을 “실·단”으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별표의 유가면 소재지란 중 “유가면 금리 815”를 “유가면 금리 169-8”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실·과·소장과”를 “실·단·과·소장과”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에”를 “실·단·과·소장에”로,
 제9조제1항 중 “실·과장이”를 “실·단·과장이”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실장·과·소장”을 “실장·단장·과·소장”으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역정보화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실·과·소”를 “실·단·과·소”로 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보훈회관 건립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 ⑩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
- ⑪ 대구광역시 달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지원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 ⑫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기술지원
 과장”을 “농촌지도과장”으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달성군 종자피해처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기술지원과”를 “농촌지도과”로 한다.

【별 표】

읍·면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항

(개정 2007. 3. 2)(개정2009.3.10)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령
행정지원과	1	소속직원의 복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연가의 계획 및 허가 나. 당직명령 다. 출장승인 라. 겸직근무 마. 병 가 바. 공 가 사. 특별휴가 아. 겸직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제19조 · 같은 조례 제7조 · 같은 조례 제8조 · 같은 조례 제9조 · 같은 조례 제21조 · 같은 조례 제22조 · 같은 조례 제23조 · 같은 조례 제27조
	2	군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의 권한 가. 대부대상자 추천 나. 자금의 회수 다. 사업지도 감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 관리조례 제4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
	3	읍·면개발자문위원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읍·면 개발자문 위원회 조례 제4조
세무과	1	지방세법중 다음의 권한 가. 지방세 완납증명서 나. 지방세 미과세증명서 다. 당해 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 수입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법 제38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 지방세법 제3조
회계과	1	물품관리조례중 다음사항 가. 불용의 결정 나. 불용품 매각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물품관리조례 제16조, 같은조례시행규칙 제6조 · 같은조례 제17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무 명	근 거 법령
주민지원과	1	<p>의료급여법중 다음의 사무</p> <p>가.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p> <p>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책정·상실·변경 요구</p> <p>다. 의료급여 증명서 발급</p> <p>라. 의료급여증의 변경확인·정정· 증회수등</p> <p>마. 의료급여 연장 승인 신청서 수합제출</p> <p>바. 의료급여 본인부담 보상금·상한금 신청서 수합제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3항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 제1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 8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13조
	2	<p>국민기초생활보장법중 다음의 권한</p> <p>가. 수급자의 관리</p> <p>나. 급여의 신청</p> <p>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발급</p> <p>라. 수급자 연간 확인 조사</p> <p>마. 차상위계층 관리 및 책정·상실· 변경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같은법 제21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 같은법 제23조 같은법 제24조
사회복지과	1	<p>기초노령연금법중 다음에 관한 사항</p> <p>가. 기초노령연금의 신청</p> <p>나. 수급권자의 현황관리</p> <p>다. 미지급 연금의 청구</p> <p>라. 수급권 자격관리</p> <p>마. 이의신청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초노령연금법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6조 같은법시행규칙제9조 같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같은법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8조 같은법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11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사무명	근거법령
사회복지과	2	<p>장사 등에 관한 법률중 다음에 관한 사항</p> <p>가. 매장·화장·개장의 신고</p> <p>나. 공설묘지의 관리</p> <p>다. 무연고 시체등의 처리</p> <p>라. 개인묘지,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설치신고</p> <p>마. 묘적부의 기록·비치</p> <p>바. 개인묘지, 봉안묘, 봉안탑, 봉안담, 자연장, 수목장 불법조치 및 사후관리</p> <p>사. 분묘의 설치기간 및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사등에관한법률 제8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3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제16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31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9조, 제20조
	3	<p>장애인복지법중 다음의 권한</p> <p>가. 장애인 등록신청·장애진단</p> <p>나. 장애인 증명서 발급</p> <p>다.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p> <p>라. 장애수당등의 지급 신청</p> <p>마. 장애인 복지카드의 교부 등</p> <p>바. 장애등급의 조정</p> <p>사. 장애상태의 확인</p> <p>아. 등록증의 반환명령</p> <p>자. 장애인 자동차표지의 발급 등</p> <p>차. 보행상의 장애가 있는자에 대한 배려</p> <p>카. 장애인 보장구 신청서 수합 및 실태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같은법시행규칙제10조 장애인복지법 제1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 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장애인복지법 제39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시행규칙제28조 같은법시행규칙제46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무 명	근 거 법령
경제지원과	1	시장사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시장사용허가 및 취소 나. 사용료부과 징수 및 감면 다. 사용자에 대한 공익상 설치명령 및 기타 지시사항	·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군공설시장설치 및 사용 조례 제7조, 제10조, 제12조 · 같은 조례 제4조, 제5조 · 같은 조례 제8조
환경과	1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가. 공중화장실의 설치 및 유지관리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8조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현황조사 가. 신규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나. 소유자, 용도 및 연료·용수· 사용량 조사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 령 제12조, 제13조
청소위생과	1	폐기물관리에 관한 다음 사항 가. 환경미화원 관리 나. 생활쓰레기 적정배출 지도 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라. 생활쓰레기 불법 투·방기 지도· 단속 마.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지도·단속 바. 청소장비 관리 사. 재활용품 분리수거 지도 아. 대형폐기물 처리 자. 생활쓰레기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차. 공중용 쓰레기용기 유지 관리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2	쓰레기 봉투의 공급에 관한 다음 사항 가. 쓰레기봉투 무상공급 나. 쓰레기봉투 판매 다. 쓰레기봉투 판매업소 지정 및 취소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무 명	근 거 법령
건설과	1	군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 허가 나. 점용료 조정 징수 및 감면	· 도로법 제38조 · 도로법 제41조
도시시설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불법형질변경 등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및 보고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133조
지수방재과	1	소하천의 점·사용허가 및 부과 징수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나.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 및 감면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 제7조
공원녹지과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권한 가. 입산신고 나. 불놓기 허가 다. 취사신고 라. 산불예방 및 진화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7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중 다음의 사무 가. 도시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행위 조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관부서	일련 번호	위 임 사무명	근 거 법령
교통과	1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및 폐지 신고 나. 기타 이륜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제5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9조 내지 110조
	2	노상방치 차량에 대한 다음의 사항 가. 노상방치차량 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113 조, 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 규 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 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 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 구광역시 달성군----- ----- ----- ----- ----- -----.
제2조(국장, 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u>군 본청</u> 의 국장, 실장 및 과장, 직 속기관 및 사업소 소장 및 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장 및 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생 략)	제2조(국장, 실장 및 과장의 직급 등)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u>본청</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 좌기관의 설치) 부군수 밑에 <u>기획감</u> 사실·경제정책실을 둔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 좌기관의 설치) ----- <u>기 획감사실·정책사업단</u> -----.
제5조(행정지원국) ① (생 략) ② 행정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국가기반보호 및 <u>비상대비</u> 에 관한 사항 6. ~ 17. (생 략)	제5조(행정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1. ~ 4. (현행과 같음) 5. ----- <u>비상대비와</u> <u>민방위 전반</u> ----- 6. ~ 17. (현행과 같음)

<p>제6조(주민지원국) ①주민지원국에 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문화체육과·환경과·청소위생과 및 교통과를 둔다.</p> <p>②주민지원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생 략) 4. <u>자원봉사 및 교육지원등에 관한 사항</u> 5. ~ 10. (생 략) 11. <u>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u> 12. <u>교통안전 시설물 설치·유지 등에 관한 사항</u> 13. <u>불법 주·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u> 14. <u>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u> 15. <u>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u> 16. <u>차량등록·관리에 관한 사항</u> 17. <u>그 밖에 주민지원·사회복지·문화체육·환경·청소위생·교통에 관한 사항</u> <p>제7조(건설도시국)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시설과·치수방재과·건축과 및 공원녹지과를 둔다.</p>	<p>제6조(주민지원국) ①주민지원국에 주민지원과·사회복지과·경제지원과·문화체육과·환경과 및 청소위생과를 둔다.</p> <p>②-----</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 3. (현행과 같음) 4. <u>자원봉사 등에 관한 사항</u> 5. ~ 10. (현행과 같음) 11. <u>경제·물가·노동정책에 관한 사항</u> 12. <u>전통시장 및 에너지에 관한 사항</u> 13. <u>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와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u> 14. <u>그 밖에 주민지원·사회복지·경제지원·문화체육·환경·청소위생에 관한 사항</u> <p>< 삭 제></p> <p>< 삭 제></p> <p>< 삭 제></p> <p>제7조(건설도시국) ①건설도시국에 건설과·도시시설과·치수방재과·건축과·교통과·공원녹지과를 둔다.</p>
-------------------------------------------------------------------------------------------------------------------------------------------------------------------------------------------------------------------------------------------------------------------------------------------------------------------------------------------------------------------------------------------------------------------------------------------------------------------------------------------------------------------------------------------------------------------------------------------------------------------	--------------------------------------------------------------------------------------------------------------------------------------------------------------------------------------------------------------------------------------------------------------------------------------------------------------------------------------------------------------------------------------------------------------------------------------------------------------------------------------------------------------------------------------------------------------------------

<p>② 건설도시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p> <p>1. ~ 15. (생 략)</p> <p><u>16. 그 밖에 건설 · 도시시설 · 치수 방재 · 건축 · 공원녹지에 관한 사항</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8조(설치) ① 법 제113조와 「지역보 건법」 제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 조 ·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군에 보건 소를, 읍 · 면에 보건지소를 설치한다. ② ~ ④ (생 략)</u></p> <p><u>제12조(설치) ① · ② (생 략) ③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축산과 · 기술 지원과를 둔다.</u></p> <p><u>제15조(설치) ① (생 략) ② 사업소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 성군 <u>유가면 용리 산 10번지</u>에 둔다.</u></p>	<p>② -----.</p> <p>1. ~ 15. (현행과 같음)</p> <p><u>16. 교통행정의 종합기획 및 여객자 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사항</u></p> <p><u>17.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 유지 등 에 관한 사항</u></p> <p><u>18. 불법 주 · 정차 관리에 관한 사항</u></p> <p><u>19.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사 항</u></p> <p><u>20. 자동차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u></p> <p><u>21. 차량등록 · 관리에 관한 사항</u></p> <p><u>22. 그 밖에 건설 · 도시시설 · 치수 방재 · 건축 · 교통 · 공원녹지에 관 한 사항</u></p> <p><u>제8조(설치) 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 건법」 제7조 -----.</u></p> <p><u>② ~ ④ (현행과 같음)</u></p> <p><u>제12조(설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농업정책과 · 농촌지도과-----.</u></p> <p><u>제15조(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u>화원읍 화원휴양림길</u> <u>126-----.</u></u></p>
------------------------------------------------------------------------------------------------------------------------------------------------------------------------------------------------------------------------------------------------------------------------------------------------------------------------------------------------------------------------------------------------------------------------------------------------------------------------------------------------------------------------------------------------------------------------------------	---------------------------------------------------------------------------------------------------------------------------------------------------------------------------------------------------------------------------------------------------------------------------------------------------------------------------------------------------------------------------------------------------------------------------------------------------------------------------------------------------------------------------------------------------------------------------------------------------------------------------------------------------------------------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 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14조(사업소)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사업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5조(출장소)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지 주민의 편의와 특정지역의 개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이나 실·과·담당관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